C - 94 - 2013

- (18) 자재를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중량 및 충격하중 등에 대한 충분한 인양 능력을 가진 양중기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(19)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붐 끝단 부착금구 및 도르래, 차체 등의 노후 및 부식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20)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에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21)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된 견고한 지반위에 설치하여야 하고,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된 견고한 지반위에 받침 판을 깔고 설치하여야 하며, 인양작업 전 설치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.
- (22) 크레인 인양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, 운전자와 신호수가 서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23) 크레인의 회전반경내에 안전휀스,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관계자 외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24) 이동식 크레인에는 운전자 및 근로자들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25) 이동식 크레인의 후진 작업 시에는 유도자에 의해 작업해야 하며, 유도 자는 운전자가 인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도하여야 한다.
- (26) 크레인 운전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크레인 사용은 지정된 운전자가 하여야 한다.
 - (나) 크레인 운전원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는 무선조종기 조작장치와 간섭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 - (다) 크레인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된다.
 - (라) 크레인 사용시 급운전, 급정지, 급강하, 급상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(마) 크레인의 정격 인양하중을 준수한다.